

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24-155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1월 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2 (0.012%)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하며,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에서는 ‘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’는 규정에 따라,
- 「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 및 주요기능

-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 (이사장: 정종섭)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

나. 출연 필요성
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, 매년 일정 기금을 적립해야하는 바,
-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해야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,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,
- 우리 구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에 법정 출연금의 예산 편성 필요

다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

- 출연금 : 19,732천원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(2023회계년도) 보통세 세입결산액(164,431,177천 원)의 1만분의 1.2 (0.012%)를 출연금으로 배정
-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 후, 세부사항은 2025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으로 편성하여 구의회 심의 및 확정

라. 추진일정

- 2024. 11월 :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립
- 2024. 11월 : 구의회 의결 요청
- 2024. 11월 ~ 12월 : 구의회 의결 및 예산 확정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-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관계법령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지방세기본법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· 운영)

-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· 조사 ·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·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 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-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 자치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 · 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-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-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(이하 이 조에서 "경영공시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 1.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, 예산 및 운영계획
 2. 전년도의 결산서
 3.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

4.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
 5. 경영실적의 평가결과
 6. 외부기관의 감사결과,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
 7.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
 8.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·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1. 1만분의 1.2 <개정 2020. 9. 8.>
 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 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